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 1492 2020년 6월 30일문화체육관광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 의 자 : 최영주 의원(찬성자 11명)

나. 발의일자 : 2020년 5월 21일 다. 회부일자 : 2020년 5월 29일

라. 상정결과 : 제295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3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

(2020년 6월 18일, 상정·원악가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(최영주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서울시는 「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」 제8조에 따라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, 이는 기관의 활동으로 인해 인권에 미칠 수 있는 실 제적·잠재적인 위험을 파악하고 평가하는 절차임.
- 「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」는 인권영향평가에 서 차별적 용어 사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우려로 개정을 권고 받은 바 있음. 이에 서울시 행정 순화어 사용으로 인권친화적 조례를 만들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○ 노점상을 순우리말인 거리가게로 수정함(안 제3조제1항제3호)

다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:「지역문화진흥법」,「국토계획법」

○ 예산조치 : 비대상사유서 첨부

○기 타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김경욱)

○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차별 및 인권침해를 야기하는 용어 중 하나인 '노점상'을 '거리가게'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.

〈신·구조문대비표〉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관리계획) ① 구청장은 관리	제3조(관리계획) ①
계획을 작성하려는 때에는 영 제	
17조제1항에서 정한 <u>사항외에</u> 다	<u>사항 외에</u>
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	
여야 한다.	,
1.~2. (생략)	1.∼2. (현행과 같음)
3. <u>노점상</u> 및 옥외광고물 등 문화	3. <u>거리가게</u>
지구 환경개선 방안	
4.~5. (생략)	4.~5. (현행과 같음)

○ 서울시는 「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」제8조1)에 따라 인권주류화,

^{1) 「}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」제8조(인권영향평가)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

공무원 인권감수성 제고, 협치 활성화를 통한 서울시 인권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인권영향평가제도²)를 도입·운영하고 있음³).

- 인권담당관에서는 2019년 7월부터 12월까지 자치법규 860개 (조례631, 규칙229)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① 차별 및 인권침해, ② 기본권 보장 및 권리구제, ③ 시민참여 보장 등 3 개 분야 9개 항목을 기준으로 평가한 결과 자치법규 62개(조례57, 규칙5) 96개 조항에서 개정사항을 도출하였음.
- 「서울시 인권영향평가제도 운영」 결과에 따르면 노점상·행상이라는 용어는 일본식 표현으로 서울시에서는 순우리말로 순화한 '거리가게'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을 2013년부터 권고하였으나 여전히 해당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안 제3조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〈용어개선 이유-노점상·행상〉

자치법규	내용	
개선사유	거리가게는 노	점상·행상의 순우리말로 서울시에서 권고한 용어임
법률·지침 상 근거	2013년 서울시 행정순화어	
	관련 법률	관련 조항
상위법상 용어 사용여부	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	제49조(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) ② 누구든지 특별 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특별자티도·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도시공원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 1.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

^{※「}서울시 인권영향평가제도 운영」, 서울특별시, p34

있다.

²⁾ 인권영향평가(HRIA):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 법령, 계획, 정책, 사업 등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치는 영향을 분석 평가하여 사전적으로 예방하거나 사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제반활동

³⁾ 인권영향평가제도 도입 및 시행계획(정무부시장 방침 제3호, '19.4.)

- 이와 같이 서울시 각 실국에서는 시민참여 기반 인권도시 조성을 위해 관행적으로 사용하던 용어를 개선하고 「서울시 인권영향평가제도 운영」에서 권고하는 사항들을 반영하여 市 주요 정책 추진시 인권 적 관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인권에 영향을 미치 는 부정적 영향을 방지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임.
- 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음.
- 5. 토론요지 : 없음.
- 6.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: 구성하지 않았음.
- 7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(출석위원 전원 찬성)
- 8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.
- 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.

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최영주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 1492

발의년월일 : 2020년 5월 21일

발 의 자 : 최영주 의원(1명)

찬 성 자 : 경만선, 김인호, 김춘례,

김태호, 노승재, 문병훈, 박기재, 안광석, 조상호, 최기찬, 황규복 의원 (11명)

1. 제안이유

- 서울시는 「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」 제8조에 따라 인권영향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, 이는 기관의 활동으로 인해 인권에 미칠 수 있는 실제적·잠재적인 위험을 파악하고 평가하는 절차임.
- 「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」는 인권영향평가에서 차별적 용어 사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우려로 개정을 권고 받은 바 있음. 이에 서울시 행정 순화어 사용으로 인권친화적 조례를 만들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가. 노점상을 순우리말인 거리가게로 수정함(안 제3조제1항제3호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역문화진흥법」,「국토계획법」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 참조

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중 "사항외에"를 "사항 외에"로 한다. 제3조제1항제3호 중 "노점상"을 "거리가게"로 순화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관리계획) ① 구청장은 관리계획	제3조(관리계획) ①
을 작성하려는 때에는 영 제17조제1	
항에서 정한 <u>사항외에</u> 다음 각 호의	사항 외에
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.	
1.~2. (생략)	1.~2. (현행과 같음)
3. <u>노점상</u> 및 옥외광고물 등 문화지	3. <u>거리가게</u>
구 환경개선 방안	
4.~5. (생략)	4.~5. (현행과 같음)